

결 정

2018 - 3089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18년 2월 1일자 「여학생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볼리비아 교수」 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학생에게 강제 입맞춤하는 볼리비아 교수

입력 : 2018-02-08 10:16 | 수정 : 2018-02-08 15:14



볼리비아의 한 명문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최근 볼리비아 가브리엘 레네 모레노 국립 대학의 한 교실에서 일어났다.

CCTV에는 홀로 공부 중인 여학생에게 교수가 다가가 강제로 입맞춤하는 순간이 담겼다. 당황한 여학생이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책을 들여다보자, 교수의 만행은 계속됐다. 교수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에게 쥐여주기

도 했다.

취업을 앞둔 여학생들은 교수들의 이런 추행에도 쉽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해당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져 나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볼리비아 명문대학의 망신”이라며 교수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영상팀 seoultv@seoul.co.kr



』

<http://stv.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8500023&wlog_sub=svt_006>

※참고: 동영상 캡처





<캡처시각 18. 2. 8. 16:5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볼리비아의 한 명문대학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게재한 사진과 동영상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동영상을 보면 교수가 여러번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교수가 성추행 대가로 돈을 건네는 모습도 보인다. 교수가 여제자를 성추행하는 부도덕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사진과 함께 뉴스스탠드에도 눈에 띄게 배치하였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 8.28

위	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